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4. 16(금) 10:00

제22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도시안전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75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4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4. 5.

2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등 상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에 기존의 “열람” 외에도 “사본을 제공” 하는 방법을 추가하고, 심의자료는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하도록 함(안 제14조)
- 나.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서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(안 제17조)
- 다.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구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를 추가함(안 제1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113조부터 제116
 - 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, 제111조부터 제115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및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나. 주요 내용

1) 안 제14조

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에 기존의 “열람” 외에도 “사본을 제공” 하는 방법을 추가하고, 심의자료는 심의결과에 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하도록 함

→ 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의록 공개방법을 확대하고 심의자료에 한해 심의 후 바로 공개토록 하여 관계자 및 일반주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.

2) 안 제17조
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에서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

→ 「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3항 단서 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관련 자치구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구공동위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임.

3) 안 제19조

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구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를 추가함

→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을 추가함.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구 권한위임사무를 조정하며,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0. 7. 30.] [법률 제16902호, 2020. 1. 29., 타법개정]

제30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) ① 시·도지사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>

② 시·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>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시·도지사가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(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)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라 시·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3. 7. 16., 2017. 4. 18.>

(이하 생략)

제113조의2(회의록의 공개)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·장소·안건·내용·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본조신설 2009. 2. 6.]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1. 1. 26.] [대통령령 제31417호, 2021. 1. 26., 일부개정]

제25조(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)

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. <개정 2012. 4. 10., 2014. 1. 14., 2021. 1. 26.>

제113조의3(회의록의 공개)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,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2012. 4. 10.>

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. <개정 2019. 8. 6.>

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“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”란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[본조신설 2009. 8. 5.]